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6년 3월 11일 (수) · 주간 제10호 · 통권 제1770호 ·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3/ 11 통권 177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
  -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록 실무 (4)
-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공개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상속인 ·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성은 주민등록여부와 생계가족 · 자산유무 · 생활관계로 판단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8 적용방법〉

1. 적용대상 : 대기업 포함 대부분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되면 모두 적용함.

2.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개념 : 당년도 근로자 수가 바로 직전연도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면 적용

3. 1인 증가 고용세액공제 금액

구분	수도권외 중소기업	수도권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우대대상	1550만원	1450만원	800만원	400만원
기타상시근로자	950만원	850만원	450만원	○

4. 청년 등 우대대상 : ① 15~34세 청년 ② 60세 이상 고령자 ③ 장애인 ④ 경력단절여성 ⑤ 입사시 청년나이요건이면 적용되고, 중간 군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 인정

5. 인원 수 계산
① 매월말 인원 평균 :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 12개월
② 우대대상 근로자 증가인원과 전체 근로자 증가인원분 2단계 파악(전체 증가분이 최대한도임)
③ 우대대상 근로자 수 증가×세액을 먼저 계산 + 나머지 일반근로자 증가수×세액 계산
④ 공제액 계산례 : 우대근로자 증가수 3명, 일반근로자 1명 줄어 전체 근로자는 2명 증가
우대근로자 세액공제액 = 전체 근로자가 2명 한도 × 1,450만원 = 2,900만원

6. 세액공제기간 : 중소 · 중견기업은 3년 + 대기업은 2년(신규 채용시 3년 혜택)

7. 사후관리 등
① 세액공제 후 2년내 고용인원 감소시 공제세액 추징 납부함
②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제29조의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조의4)와 중복적용 안됨

8. 기타 제한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임(중소기업 7%, 8%, 9% 등, 과표 100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초과액은 17%)
② 납부세액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되면 10년 내 이월공제는 적용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70호 / 주간 10호 2026. 3. 11.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8 적용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 원칙 -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록 실무 (4)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 사은품 증정 문의 - 한국인 비거주자 해외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소모품 부가세 공제 여부	4 5
눈에맞는절세미인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공개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6
매일절세재무요점	- 부동산 세제 어떻게 구성되나 - 한국과 일본의 근로소득세율 비교	9 10
직장인Survival	성과 면담을 준비하는 방법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재산-230, 2025.04.15)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09, 2025.06.25)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상속인 ·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성은 주민등록여부와 생계가족 · 자산유무 · 생활관계로 판단함	
세무정보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15 4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5

경영판단 원칙
-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록 실무 (4)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의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이다. 경영판단원칙 적용을 위해 이사회 의사결정 기록은 충분한 정보 수집, 토론 과정, 결의 내용을 상세히 증명해야 한다. 사안별 개별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주주 열람을 위한 보존을 철저히 한다. 법령 위반 행위는 경영판단 원칙 적용 제외되므로 기록의 투명성 확보가 중시된다.

⦿ 의사록 작성 핵심 요소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 토의 경과, 결의 결과, 반대 이사와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며, 출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이다. 중요한 토의사항은 발언자별로 상세 기록하고, 녹취 자료를 병행 보존하여 의사결정의 실질성을 입증한다.

- 정보 수집 증거 :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과정(자료 제시, 전문가 의견 등)을 기록.
- 토론 과정 : 이사회 구성원별 의견 교환과 논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 결의 정당화 : 회사의 구체적 이익 가능성을 근거로 한 판단 근거 명시.

⦿ 의사결정 기록 필수 항목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적용을 위한 이사회 의사결정 기록은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게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출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다. 아울러 녹취 자료 병행 보존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을 증명하도록 한다. 이사 스스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결의에 반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핵심적인 필수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회의 기본 정보 : 일시, 장소, 출석·결석 이사 명단(기명날인·서명 필수), 안건 목록.]
- 정보 수집 과정 : 제시 자료, 전문가 의견, 이용 가능 정보 검토 증거(보고서 첨부 등)

• 토의 경과 : 발언자별 의견 교환, 논의 요지 상세 기록(찬반 의견 포함)
• 결의 내용 : 결의 결과, 회사의 구체적 이익 가능성 근거, 반대 이사와 이유 명시
• 기타 증빙 : 이해관계 공시 여부, 법령 준수 확인, 보전 자료(예 :녹취록)

이 항목들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여 매 회의마다 작성·보존되어야 하며, 주주 열람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의사결정 합리성 입증 문서 증거 유형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적용 시 결정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사회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 정보 수집 자료 : 보고서, 재무 분석, 시장 조사 자료, 이용 가능 정보 목록(예: 대출 조건, 사업성 평가 등
• 전문가 자문 의견 : 외부 전문가 의견서, 법률·회계 자문 보고서, 감사인 평가 자료.
•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 : 토의 경과(발언자별 의견), 결의 근거, 정보 검토 과정 상세 기록(기명날인 필수
• 준법 확인 자료 : 법령 준수 검토 의견, 이해관계 공시 서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결과

이 문서들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번 첨부 보존하며, 주주 열람 가능하도록 관리되어 합리적 판단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한다.

◉ 법령 위반 토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사회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토의할 때 경영판단 원칙 적용을 위해 의사결정 기록은 법령 준수 검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주요 실무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령 준수 검토 과정 : 관련 법령(상법 제399조 등) 인용, 위반 가능성 토의 및 전문가 의견 제시 기록
• 이해관계 공시 : 거래 관련 이해관계 사실 공시 여부와 확인 절차 명시
• 찬반·기권 의견 상세 : 발언자별 법령 위반 우려 의견, 반대·기권 이사와 그 이유(의사록 기재 필수
• 결의 근거 명확화 : 법령 준수 판단 근거, 대안 비교 및 리스크 평가 요지 기술
• 증빙 자료 첨부 : 준법 의견서, 내부통제 확인서, 녹취 자료 병행 보존

이 사항들은 매 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으로 기록되어 주주 열람 가능하도록 보존되어야 하며, 투명성 부족 시 경영판단 원칙 적용이 부정될 수 있다

수리보상비가 대가 개념이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함

Q CCTV 수리비 후 수리업체에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CCTV 업체에서 수리비에 대해 보상한다고 하여 당사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하는데 카드결제 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리업체와 CCTV 업체는 다른 사업자 입니다.

A 귀사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CCTV업체로부터 수리비를 보전받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개념이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함.

사은품 증정 문의

Q 물품을 판매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고객에게 증정하였는데
고객이 물품은 반품하고 사은품은 별도로 구매를 원하여 당사로 현금 이체 후 별도 구매하였습니다.
1. 당사에서 사은품 구매 시 비용 처리하였는데 입금금액에 대해 해당 건 원가 상계 처리 후, 차액은 잡이익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2. 사은품을 별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소급된 금액만큼만 매출원가나 매입할인으로 전표 계정처리하시고 수불과의 차이를 소명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인 비거주자 해외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Q 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유럽촬영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현지 코디, 차량 렌트, 번역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율 적용은 총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지요?

A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니고 국내법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소모품 부가세 공제 여부

Q 당사는 현재 테스트 차량 관련 유지비 및 수선비 등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차량관련 소모품 (가로바, 선바이저, 등등) 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 후 사용하려 하는데, 이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테스트용 차량관련 소모품비도 테스트차량 유지비 및 수선비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27일 (금)	3월 3일 (화)	3월 4일 (수)	3월 5일 (목)
미 달 러	(USD)	1424.50	1435.40	1464.50	1478.80
일 본 엔	(JPY)	913.38	912.35	929.28	941.58
영 국 파 운 드	(GBP)	1920.58	1924.51	1956.13	1977.23
캐 나 다 달 러	(CAD)	1041.26	1049.69	1070.74	1084.16
홍 콩 달 러	(HKD)	182.08	183.52	187.64	189.17
중 국 원	(CNH)	207.91	209.51	212.82	213.71
유 로 화	(EUR)	1680.70	1678.48	1701.09	1720.58
호 주 달 러	(AUD)	1011.25	1019.42	1030.72	1046.77
싱 가 폴 달 러	(SGD)	1126.89	1126.91	1147.05	1160.1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66.71	365.52	371.14	375.19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 비공개성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일상적 기술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선진기술 및 선진기법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거래가 빈번해졌다.

이렇게 선진기술이나 기법 등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과 원천징수 등 세무상의 처리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기술도입 등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워 실무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도입을 문서나 서류만이 아닌 기술자가 파견되어 전수시키기 때문인데, 이렇게 기술자를 통해 기술도입을 하는 경우 기술에 초점을 맞춰 사용료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술의 비공개성인데,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면 된다.

또한 용역제공 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transfer) 여부로 판단이 가능한데, know-how(사용료소득)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 · 기술 · 제조방법 · 판매방법 ·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로서 상대방에게 노하우가 제공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하우 제공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의무가 없고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재국조46017-5, 2003. 1. 16).

반면에 인적용역 제공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에 있지 않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warranty)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구 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 무형의 가치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 방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⑥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 특허권 등이나 know-how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⑨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도면		·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月 부동산 세제 어떻게 구성되나

취득세	• 집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부과)
보유세	•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양도소득세	•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 •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음

火 오피스텔 과세 대상 여부

구분	과세 대상 여부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월세 소득 비과세
2주택자	모든 월세 소득 과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자 이상	월세 소득 과세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한국과 일본의 근로소득세율 비교

한국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000만원 이하	34%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일본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
330만엔 이하	10%	9만7500엔
695만엔 이하	20%	42만7500엔
900만엔 이하	23%	63만6000엔
1800만엔 이하	33%	153만6000엔
4000만엔 이하	40%	279만6000엔
4000만엔 초과	45%	479만6000엔

RIA 핵심 요건 및 혜택

구분	주요내용
혜택적용 한도	5000만원(인당 매도금액 기준)
입고 대상 해외주식	최소금액(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수량, 입고시점 보유수량)
RIA 내 국내 재투자 대상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ETF, 예탁금
의무 유지 기간	RIA 내 1년 이상 투자 유지

성과 면담을 준비하는 방법

1. 지난 업무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면담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를 정리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정리한다.가능하다면 결과의 변화나 성과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2. 성과뿐 아니라 과정도 돌아본다
성과만 강조하다 보면 업무 과정에서의 경험을 놓치기 쉽다.
어떤 점이 잘 되었는지,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돌아본다.
이 과정은 자신의 강점과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스스로의 성장 포인트를 정리한다
성과 면담은 평가를 듣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성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업무를 통해 어떤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또 앞으로 어떤 역량을 더 키우고 싶은지도
미리 정리해 두면 면담이 더욱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

4. 궁금한 점과 의견을 준비한다
면담은 일방적인 설명의 시간이 아니다.
업무 방향, 역할 기대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 둔다.
적절한 질문은 면담을 보다 생산적인 대화로 만든다.

5. 다음 목표를 함께 고민한다
성과 면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다음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어떤 업무에 도전해 보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이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향후 업무 계획도 더욱 명확해진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①

상속인 ·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성은
주민등록여부와 생계가족 · 자산유무 ·
생활관계로 판단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재산-230, 2025.04.15

▌질 의

- 상속인 甲은 국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22.10월이후 유학 후 현재 국외 소재 대사관에서 근무 중* 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미해당
- '24.12월 甲의 父 사망

질의

- 국내에「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질 의

- 신청인은 2024.12월부터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함
  - 질의인은 A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출기간은 3년임
  - 국내 가족, 직장, 사업체, 부동산 보유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탈퇴한 상태임

질의

- 소득세법 제1조의2 등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기 거주자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 · 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 · 베트남 조세조약」제4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09, 2025.06.25

▌질 의

- 甲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코인노래연습장 3곳(A · B · C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 2023.10월 乙법인을 설립한 후, 2024.7월 C사업장을 乙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구체적인 전환방식은 불분명)
- 법인전환 이후에도, 甲은 A · B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함

질의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 해당법인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100% 지배 & 대표자)
  -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아님)을 설립한 후,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

사전법규법인-19, 2025.04.17

▌질 의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준거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일대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선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두번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 세무조사 직권유예… 신청 시 법인세 3개월 연장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64개로 확대, 반도체·미래형 운송·바이오의약품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법령상 의무 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이 추가됐다.

적용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재정경제부, 2026. 3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 ·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Ⅰ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ㅇ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운송·이동,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ㅇ (개정안)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64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분야	사업화시설 (신규: 3개, 확대: 2개)
반도체	(신설)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확대)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 → 패키징까지 확대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전력 반도체)

미래형 운송·이동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바이오 의약품	(확대)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 Buffer(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 추가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 (개정안)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193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분 야	사업화시설 (신규: 6개)
바이오·헬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첨단 소부장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
탄소중립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중

* ①산업재해 예방시설, ②화재예방 · 소방시설, ③광산안전시설, ④내진보강시설, ⑤비상대비시설

** 건물·구축물, 비품, 운송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적용이 원칙이나, 안전시설은 허용

○ (개정안) 안전시설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추가
ㅇ 법령상 의무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ㅇ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 추가

ㅇ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II 기타 개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마련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시행령(§22의12) 개정내용 >

◇ 공제대상 웹툰제작자·웹툰콘텐츠·제작비용 등을 규정
ㅇ 공제대상 웹툰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❶ 공제대상자	웹툰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② 본인이 주요 제작(시나리오, 콘티, 그림, 편집) 인력이거나 주요 제작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③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❷ 공제대상 비용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❸ 제외되는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2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 기계 대상 확대

ㅇ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

3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규정

ㅇ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센터에 구입을 신청하여 수입을 대행

** 식약처장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관세 면제 대상 해외개발 핵심광물 요건 규정

ㅇ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 수입시 관세 면제

* (면제 한도) 지분 물량 + 처분권 물량(지분 물량 2배 이내로 한정) 합계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 추가

ㅇ (현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또는 서류보관의무 위반시 인증 유효기간 단축**

*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인증을 받은 수출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원산지 증명 허용(7개 FTA) 및 간소한 원산지 증명 절차 적용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

ㅇ (개정안) 인증 유효기간 단축 사유에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 추가

□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조정

ㅇ (현행) HS 2017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ㅇ (개정안)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하고 FTA 협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 예: (한-아세안)역외산 김으로 생산·수출한 조미김은 한국 원산지로 불인정
(한-베트남)역외산 식물성 농축액(인삼 제외)으로 생산·수출한 식료품은 한국 원산지로 인정

□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 허용

< 시행령(§213③) 개정내용 >

◇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어 미반출된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회수 예외* 인정

* (원칙) 출국 취소 등으로 면세품 외국 미반출시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

ㅇ 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한정

ㅇ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허용

※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적용: $800 이내(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상세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4의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26의8⑫) >

□ IMA*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만기시 원금 보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IMA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 ㅇ 수익권 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수익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수익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 ㅇ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계산방식 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의무이행여부 보고 의무 및 절차 삭제(법인칙 §19·§19의2)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38·§39) >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의무 삭제

현 행	개 정 안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절차 ㅇ (보고내용)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 보고 ㅇ (보고대상)	□ 의무이행여부 보고절차 삭제 <삭 제>

▪ (한국학교 등*) 주무관청 * 한국학교(교육부), 바보의나눔(행안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부) 등 ▪ (공익법인) 국세청 ㅇ (보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삭 제>
□ 주무관청*·국세청의 의무이행여부 등 점검 의무 * (한국학교 등의 주무관청) 보고결과 점검하여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장에 통보	□ (좌 동) ※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 점검하여 한국학교 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 국세청장에 통보

<개정이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법인세 추계과세 시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의 명확화(법인칙 §54)

현 행	개 정 안
□ 사업연도중 대표자 변경시 구분계산* 대상 상여처분 *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 ㅇ 사외유출금액의 귀속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간 차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 사업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및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

<개정이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추계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예외 관련 조문 정비(법인칙 §79)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예외 거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ㅇ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운수용역, 재활용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 ㅇ 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범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공받은 재화 · 용역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칙 §15③)

< 시행령 개정내용(개소령 §34④) >

□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등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 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폐기사실 확인서류 제출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ㅇ (멸실 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 증명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ㅇ (환입확인서) 별지 제28호의3서식 <추 가>	□ 증명서류 추가 ㅇ (좌 동) ㅇ (폐기사실 확인서류)「지방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

<개정이유> 담배의 미반입 폐기사실 확인서류 규정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ㅇ 농업용 트랙터, 무인항공기 등 <추 가>	□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농업용 지게차

<개정이유>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11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22의12)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요건 등
- ㅇ (공제대상 내국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사업자*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 ㅇ (공제대상 비용) 웹툰콘텐츠* 제작자 인건비 등 시행규칙에 위임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제대상 내국인 요건 ㅇ 웹툰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 본인이 주요 제작(시나리오·콘티·그림·편집) 인력이거나 주요 제작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제작비 집행·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담당할 것 □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범위 - (기획) 시나리오, 기획비, 인세 - (제작) 작가비, 제작 프로그램비, 디자인비 - (편집) 편집비, 감수료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작비용 ㅇ 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동일) □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공제비용 계산방법 ❶ 첫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하여 지출한 모든 제작비용 ❷ 이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비용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2) 지방이전 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24)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60·§60의2) >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합계액 7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본사 이전 감면요건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 ㅇ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 본사 이전 감면요건·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 ㅇ (좌 동)
<신 설>	□ 공장 이전 감면한도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 ㅇ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조특칙 §2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ㅇ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ㅇ 주포제2농공단지 * (지정기간) ’23.12.30. ~ ’25.12.29.	□ 지정기간 만료지역 삭제, 신규지정지역 추가 ㅇ (좌 동) <삭 제> ㅇ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
<추 가>	

<개정이유>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신규지정일 이후 최초로 입주한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규칙 시행일 이전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조특칙 §42의2)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82의5·§83의3)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의 소득요건 판단 절차
- ❶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또는 ❷금융기관의 가입자 소득 확인 요청 →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 가입자의 의견제시
- 의견제시의 구체적 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ㅇ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청년형소장펀드 등 <추 가> ㅇ (내용)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일로부터 2개월 內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 적용 대상 추가 ㅇ (좌 동)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ㅇ (좌 동)

<개정이유> 상호금융 예탁금 가입자 및 출자금 출자자의 권익 보호

(5)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추가 · 정비 (조특칙 §46의2)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첨부서류 추가 · 정비
ㅇ 거주자군 제출서류	
- 거주자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 및 작물재배업 소득 계산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65②(2)에 따른 서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에 따른 서류
- 소득칙상 기부금명세서 등 <추 가>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ㅇ 내국법인군 제출서류	
- 내국법인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포함	
- 해외현지법인 소득 관련 자료*	- (좌 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82①(60)에 따른 서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에 따른 서류
ㅇ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군 제출서류	

- 소득금액 배분액의 원천징수 관련 서류(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	- (좌 동)

<개정이유>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시 첨부서류 추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펀드 범위 규정(조특칙 §46의4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16) >

□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 유가증권을 국내상장주식, 국·공채, 펀드 등으로 규정
ㅇ 펀드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특례 대상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 ㅇ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 사모집합투자증권*,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로 발행한 증권

<개정이유> 대학의 안정적 자산운용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유턴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 계산방법 규정 및 감면 신청 서류 추가(조특칙 §47의2)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1) >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
ㅇ 감면대상 소득 계산식

$$\text{복귀 후 국내 사업장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text{국내 사업장의 매출액}}$$

⇒ 국외사업장 축소량 해당금액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장 축소량 해당금액 환산방법 ㅇ 축소완료 후 복귀한 경우 - 축소량에 해당하는 현지화 매출액에 평균 환율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 <추 가>	□ 복귀 후 축소완료시 국외사업장 축소량 해당 금액 환산방법 추가 ㅇ 축소완료 후 복귀한 경우 및 복귀 후 축소 완료한 경우 - (좌 동) ㅇ 복귀 후 축소진행 중인 경우 - 축소량에 해당하는 현지화 매출액에 평균 환율 적용
□ 유턴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ㅇ 국외 사업장 2년 이상 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서류 등 ㅇ 산업부장관이 발급한 국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추 가>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 확인 시 필요 서류 추가 등 ㅇ (좌 동) ㅇ 산업부장관이 발급한 국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8)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부규정 마련(조특칙 §47의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4⑤) >

□ 적자배당의 경우 배당성향을 25%로 간주

ㅇ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의 부채비율 산정방식 ㅇ (원칙)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ㅇ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개정이유> 부채비율 산정방법 명확화

(9)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시 농·어민 확인 서류 제출 부담 완화(조특칙 §48④)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ㅇ (농·어민 확인 서류) 농·어민확인서* * 지역농협, 지역수협 또는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장이 발급	□ 농·어민 확인 서류 종류 추가 ㅇ (좌 동) ㅇ 농·어민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임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발급 (어업)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 ※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거래 조성에 따른 법령 정비 등(조특칙 §50의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15) >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와 매매거래 조성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를 시장조성자로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시장조성자 요건 ㅇ (요건) ❶ 및 ❷ ❶ 한국거래소 결제회원 ❷ 시장조성 업무 담당 임원·직원 지정	□ 요건 추가 ㅇ (좌 동) ❶ 한국거래소 결제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참가자 ❷ (좌 동)
□ 회전율 산식 ㅇ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거래량 ÷ 상장주식수	□ 산식 조정 ㅇ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정규시장 거래량 ÷ 상장주식수
□ 증권거래세 면제 거래내역 통보 ㅇ (주체) 한국거래소 ㅇ (대상)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 ㅇ (내역)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	□ 통보 주체 추가 ㅇ (주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ㅇ 산업재해 예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 가스공급,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제조·저장소, 송유관 등의 안전유지 시설 <추 가> ㅇ 화재예방·소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내진보강시설 등	□ 안전시설 범위 확대 ㅇ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 포함 - (좌 동) -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 지능형 영상 기록장치 ·안전 경보장치, 디스플레이 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 산업재해예방 목적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 비접촉식 개폐장치 - 자연재해 예방 목적 방파호안 - 추락방지 목적 족장 및 트러스 등 구조물 ㅇ (좌 동)

<개정이유> 안전시설 투자 유인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ㅇ 14개 분야* 187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추 가>	□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193개 시설 - 신규 6개

분야	세부기술
바이오·헬스(1)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첨단 소부장 (2)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
탄소중립 (3)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ㅇ 8개 분야* 61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운송·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추 가>	□ 대상 확대 ㅇ 8개 분야 64개 시설 - (시설) 신규 3개, 확대 2개 ▪ (신규) 3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미래형 운송·이동 (2)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LNG 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 (확대) 2개 <table><tr><th>분야</th><th>세부기술</th></tr><tr><td>반도체 (1)</td><td>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 (설계·제조 → 패키징까지 확대)</td></tr><tr><td>바이오 (1)</td><td>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 Buffer(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 추가</td></tr></table>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추가(국조칙 §2)

< 법 개정내용(국조법 §6) >

□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추가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
*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ㅇ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ㅇ 정상가격 입증서류 <추 가>	□ 제출대상 자료 추가 ㅇ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 * 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국외특수관계인 수정신고서 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국조칙 §37)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요건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내국인이 저세율국 소재 자회사에 소득 유보시 국내배당 간주하여 과세 ㅇ 아래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이 해외지주회사 전체 소득의 90% 이상 - 같은 국가 - 같은 지역 · 유럽연합(EU) · 중국과 홍콩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적용 제외지역 확대 ㅇ (좌 동) - 같은 지역 범위 확대 · 유럽연합(EU)과 영국 · (좌 동)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당기법인세 배분방법 (국조칙 §70·별표2)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1①·②)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에 기인하여 그 소재지국에 납부한 대상조세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얻은 기업*으로 배분하도록 함
*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포함
ㅇ 세부 배분방법, 배분한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괄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납부한 대상조세 배분방법 * 전세계 외납세액 통산 후 단일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 (국가별 한도 x) ㅇ (배분대상)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 배당지급기업 등 (구성기업 여부 무관) ㅇ (배분금액) 아래 순서에 따라 기업별 배분금액 계산 ❶ 본점·주주구성기업 과세소득 중 국외원천소득 산정 - 본점·주주구성기업이 직접 취득한 국외원천소득*과 해외 소재 배분대상기업이 취득한 소득**을 모두 합산

<신 설>

* 국외원천배당소득도 포함

** 본점·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하나 배분대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

❷ 배분대상 대상조세 총액 산정

※ 배분대상 대상조세 총액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본점·주주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글로벌최저한세 규칙 기준)
–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경우 당기법인세 추정액*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부담세액
* 국내원천소득 관련 당기법인세에 일정 조정사항을 반영한 값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❸ 기업별(본점·주주구성기업 포함) 배분기준액 산정

※ 기업별 배분기준액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 (기업별 국외원천소득 귀속분* × 적용세율**)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해당 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공제가능세액
* 본점·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근거한 기업 유형별 국외원천소득 귀속분 판단 기준

기업 유형	국외원천소득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	본점·주주구성기업 과세소득에 포함된 해당 기업의 소득 귀속분
배당지급기업	배당 지급액 (본점·주주구성기업의 국외원천배당소득)
본점·주주구성기업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취득한 소득

** 본점·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적용되는 세율

❹ 기업별(본점·주주구성기업 포함) 대상조세 배분

※ 기업별 대상조세 배분금액

$$= \text{배분대상 대상조세 총액} \times \frac{\text{해당 기업의 배분기준액}}{\sum \text{(기업별 배분기준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②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국조칙 §70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1③·④) >

□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근거 마련

ㅇ 배분금액·한도,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 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 배분금액 산출방법
: ❶ ~ ❸ 순서에 따라 계산
❶ 발생 원천*에 따라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 분류
* ① 회계상 순손익 중 GloBE 소득·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② 회계상 순손익 중 GloBE 소득·결손에 포함된 수동소득 外 항목
③ 회계상 순손익 중 GloBE 소득·결손에 포함된 수동소득 항목
❷ 유형별 배분할 이연법인세 배분금액 계산
※ 배분금액 = 외납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 추정액* - 공제대상외납세액**
* 상기 유형 ②의 경우, 이연법인세비용에 적용되는 세율이 15% 초과 시 15%로 재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소득을 얻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합계액(상기 유형 ①의 경우, 외납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 추정액 초과 불가)
❸ 발생 원천(상기 ①~③)별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table>
<tr><th rowspan="2">유형</th><th colspan="2">배분 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처리</th></tr>
<tr><th>배분구성기업</th><th>피배분구성기업</th></tr>
<tr><td>①</td><td>차감</td><td>미반영</td></tr>
<tr><td>②</td><td>차감</td><td>가산</td></tr>
<tr><td>③</td><td>한도* 이내분 : 차감
한도 초과분 : 잔존</td><td>한도 이내분 : 가산
한도 초과분 : 미반영</td></tr>
</table>
*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한도

□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5년선택)
ㅇ 배분하는 구성기업의 관할국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법인세에 일괄하여 적용</td></tr>
</table>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③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방법 보완(국조칙 §70의3)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대상조세 배분대상 구성기업
ㅇ 혼성기업
ㅇ 피지배외국법인
<추 가></td><td>□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역혼성기업</td></tr>
<tr><td>□ 대상조세 배분방법
ㅇ (배분한도) A x B
- A :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한 대상조세 고려 없이 산출한 배분대상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최저한세율(15%) - 국가별 실효세율</td><td>□ 이연법인세 관련 배분방법 추가
ㅇ (배분한도) (좌 동)
- A : 주주구성기업의 대상조세(당기+이연법인세) 고려 없이 산출한 배분대상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좌 동)</td></tr>
</table>

<table>
<tr>
<td>- B : 수동소득
<추 가>
※ 국조칙 §70의2 신설에 따른 개정</td>
<td>- B : (좌 동)
ㅇ (배분순서) 배분누적액과 한도가 동일해지는 수준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된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우선순위 >
<table>
<tr><td>1순위</td><td>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중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환원 관련분</td></tr>
<tr><td>2순위</td><td>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td></tr>
<tr><td>3순위</td><td>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관련분</td></tr>
</table>
* 이연법인세 배분액 : 음수는 0으로 간주
- 한도 초과 시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td>
</tr>
</table>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④ 외화환산차익 정의 명확화(국조칙 §73)

현 행	개 정 안
□ 외화환산차익 정의 ㅇ 다른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차익	□ 용어 명확화 ㅇ 다른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차익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⑤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구체화(국조칙 §89)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9③) >

□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OECD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값

❶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명확화

-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정부조치 또는 법인세제 신규 도입으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한 것

❷ ❶에 따라 제외된 이연법인세자산이 일정기간 내 환원*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20%까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 가능

*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소멸하는 것

□ 이연법인세자산 제외 및 이연법인세자산 환원액의 산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 최초적용연도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이 원칙 ㅇ ❶·❷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산입 제외 ❶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추 가> ❷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한 이연법인세자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과세소득 간 영구적 차이로 인한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도 포함 <추 가> <신 설>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 요건 명확화 ㅇ 산입 제외요건 명확화 ❶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근거 추가 - 정부의 세제혜택 제공행위* * 약정·예규·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경우는 제외) - 과세표준 확정 후 이를 변경하는 구성기업의 소급적 의사결정 ❷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원천 추가 - (좌 동) * (예시)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인정 - 향후 지출·활동 등을 전제로 지급받은 세제혜택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될 소득 관련 대상조세의 사전 납부는 제외 ㅇ 산입 제외의 예외 - '24.11.18일 이전 발생한 제외대상 이연법인세자산이 일정기간 내 환원된 경우 < 이연법인세자산 환원액 산입기간 > 이연법인세 발생근거 / 환원기간 ①정부의 세제혜택 제공 / '24~'25년 개시 사업연도 ('27.6월 이전 종료) ②구성기업의 소급적 결정 / '24~'25년 개시 사업연도 ('27.6월 이전 종료) ③법인세제 신규도입 / '25~'26년 개시 사업연도 ('28.6월 이전 종료) * 영 §139③(5)다

<table>
<tr>
<td>□ 구성기업 간 자산이전* 시 취득기업의 최초 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계산
*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ㅇ 이전자산을 처분기업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 취득기업은 이전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등을 기초로 조정대상조세 계산
<추 가>

ㅇ 이전자산을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 ❶·❷ 방법 중 택일
❶ 취득기업이 이전자산을 처분기업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산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❷ 취득기업은 공정가액을 기초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출</td>
<td>□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 요건 명확화 등

ㅇ (좌 동)

- 처분기업의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아래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
< 제외대상 이연법인세자산 >
<table>
<tr><th>발생기간</th><th>이연법인세 발생근거</th></tr>
<tr><td rowspan="3">‘21.12.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td><td>①정부의 세제혜택 제공</td></tr>
<tr><td>②구성기업의 소급적 결정</td></tr>
<tr><td>③법인세제 신규도입</td></tr>
</table>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된 항목
ㅇ (좌 동)
❶ 조정대상조세에도 반영
❷ (좌 동)
- 단, 처분기업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이연법인세자산 계산(방법❶)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 허용</td>
</tr>
</table>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⑥ 전환기 적용면제 간이 실효세율 계산방법 명확화(국조칙 §86)

현 행	개 정 안
□ 국가별 간이 대상조세(간이 실효세율의 분자) 계산방법 ㅇ 적격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 - (❶ + ❷ + ❸)	□ 간이 대상조세 차감항목 추가 ㅇ 적격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 - (❶ + ❷ + ❸ + ❹)

<table>
<tr>
<td>*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연결조정 전 재무제표 등
❶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❷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법인세비용
❸ 혼성거래약정*에 따라 복수의 구성기업에 중복 산입된 법인세비용
* 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세부담 경감 목적의 거래(‘22.12.16일 이후 체결분)
<추 가></td>
<td>○ (좌 동)

❹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에서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관련한 법인세비용
< 제외대상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table><tr><th>발생기간</th><th>이연법인세 발생근거</th></tr><tr><td rowspan="3">‘21.12.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td><td>①정부의 세제혜택 제공</td></tr><tr><td>②구성기업의 소급적 결정</td></tr><tr><td>③법인세제 신규도입</td></tr></table>※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된 항목
- 단, 이연법인세자산 환원 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동일 방식으로 산입 가능*
*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20%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입액 + 간이 대상조세 산입액)</td>
</tr>
</table>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⑦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보완(국조칙 §88①~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특례 * 법 §77에 따른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❶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판단 시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세전손익 활용 ※ (원칙) 적격국가별보고서 상 총수익 및 세전손익금액 활용 ❷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지분보유자 중 일부라도 정해진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서 전환기 적용면제 미적용	□ 특례 대상기업 명확화 ○ ❶의 경우 :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만 적용 ○ ❷ ~ ❻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외의 구성기업에도 적용

* 예시 : 귀속소득에 대해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 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 산정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분배된 금액 차감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당지급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 과세하는 제도 ❹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판단 시 투자구성기업은 미고려 ❺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판단 시 세전손익에서 5천만유로 초과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 차감 *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순손실액 ❻ 최초적용연도를 전환기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간주 ※ (원칙)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⑧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시 최초적용연도 판단방법 보완(국조칙 §88⑦(1)·(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시 최초적용연도 판단방법	□ 예외 사례 보완
ㅇ (원칙) 전환기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사업연도 ㅇ (예외) 다음 사례에 해당 시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업연도	ㅇ (좌 동)
❶ 구성기업 간 자산 이전 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방법	<삭 제>
❷ 해외활동 초기기업 대상 소득산입보완규칙 면제 ❸ 신고·납부서류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4)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① 내국추가세 계산 시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의 예외(국조칙 §78의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5의3③) >

□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외에 소재한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해당기업에 배분

ㅇ 배분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추가세 계산 시 수동소득* 관련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허용 *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연금소득 등 ㅇ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국내 주주구성기업 등의 선택에 따라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 * 국외의 피지배외국법인과 혼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수동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는 배분한도 규정(하단 표) ※ (참고)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한도 × A: 수동소득에 대해 국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국외구성기업 소재국의 추가세액비율 B: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수동소득 금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② 내국추가세 신고 관련 서식
(국조칙 §91·§92, 별지 제59호·제60호·제61호 서식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2)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하는 국내구성기업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신고 서식 ㅇ 내국추가세액신고서(공통제출) : 납세의무자 및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별 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서 ㅇ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법정배분 시) : 법정배분방식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결과 및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지정배분 시) : 지정배분을 적용 시, 각 기업의 합의에 따른 배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 규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1)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의 반려사유 정비(관세칙 §33의2)

현 행	개 정 안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신청하여 사전에 확정받는 제도 ㅇ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은 농산물 혼합물 ㅇ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물품	□ 반려사유 추가 및 위임규정 신설 ㅇ (좌 동)
<추 가>	ㅇ 분석이 곤란한 물품 ㅇ 분석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ㅇ 동일인이 동일 물품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ㅇ 그 밖에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반려사유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반려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규정 (관세칙 §39⑤ 신설·§40⑤ 신설·§40⑥)

< 법 개정내용(관세법 §91(4의2)) >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 ㅇ 고쉐병 치료제, 부신백질 디스트로피환자 치료제 등 12종	□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다음의 의약품 -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한 의약품 - 식약처장이 질병청장과 협의를 거쳐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긴급도입 의약품

<개정이유>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 요건 규정 (관세칙 §43⑫ 신설·§44⑧ 신설·§58(4) 신설)

< 법 개정내용(관세법 §93(19))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관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면제 대상 물품 ㅇ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방사선 측정기, 시료 채취 및 처리기 등	□ 면제 대상 핵심광물 규정 ㅇ (좌 동)
<추 가>	ㅇ 요건(❶+❷)을 충족한 핵심광물 - ❶조사·개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될 것 - ❷해외개발사업자가 확보한 지분 및 처분권*의 합계 물량 이내일 것 * 지분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
□ 사후관리 면제 대상 물품 ㅇ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등 <추 가>	□ 대상 물품 추가 ㅇ (좌 동)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개정이유> 핵심광물의 국내반입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 허용(관세칙 §48①(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관세령 §213③) >

□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출된 면세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물품에 한해 회수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 미화 800달러 한도 ㅇ 통상적인 착용·휴대 물품, 직업용구, 재반입물품 등	□ 미반출 미회수 면세품 추가 ㅇ (좌 동)

ㅇ 통상적인 착용·휴대 물품, 직업용구, 재반입 물품 등 <추 가>	ㅇ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 구매 물품으로서 회수하지 않은 물품

<개정이유>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객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회수하지 않은 물품부터 적용

(5) 수출용원재료 과다환급금등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조정(환특칙 §16)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금등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ㅇ 연 1.2%	□ 가산금 이율 조정 ㅇ 연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6)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FTA관세칙 §8⑥)

현 행	개 정 안
□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호주측 발급기관 ㅇ 호주상공회의소 ㅇ 호주산업협회 ㅇ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ㅇ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추 가>	□ 호주측 발급기관* 추가 * 한국은 업체 자율발급이므로 발급기관 없음 ㅇ (좌 동) ㅇ WiseTech Global Pty Ltd

<개정이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동사항 반영
<적용시기> 신규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7)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 추가(FTA관세칙 §18⑥)

현 행	개 정 안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	□ 유효기간 단축 사유 추가

*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인증을 받은 수출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원산지 증명 허용 및 간소한 원산지 증명 절차 적용 ㅇ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ㅇ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ㅇ (좌 동)
<신 설>	ㅇ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

<개정이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8) FTA 사전심사 수수료 합리화(FTA관세칙 §31③)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 수입신고 전에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등을 관세청에 미리 심사 신청 ㅇ (대상) 모든 신청 물품 ㅇ (금액) 신청 물품당 3만원	□ 수수료 부과대상 축소 ㅇ 물리적·화학적 분석 필요물품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사전심사 활성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FTA관세칙 별표4·별표14)

현 행	개 정 안
□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ㅇ ‘HS(품목번호) 2017’ 기준으로 개별 품목별 규정	□ 협정 개정사항 반영 ㅇ ‘HS 2022’ 기준으로 변환* * 품목번호 개정과 함께 일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개정이유> 국제 품목분류체계 개정 및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협정 개정내용 반영

<적용시기> (한-아세안 FTA) ‘26.5.1.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베트남 FTA) 협정 개정 발효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6. 3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1.~ 6.1.)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장려금 》근로장려금(반기) 》직접입력 신청

□ (자동신청 적용)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년 귀속) 65세 이상·중증장애인 → ('24년 귀속) 60세 이상 → ('25년 귀속) 모든 연령

○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습니다.

○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년 귀속 정기분('28.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지급액)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입니다.

○ 홈택스, ARS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25.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합니다.

□ (상담편의 제고)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 직접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지급액

⊙ 신청·지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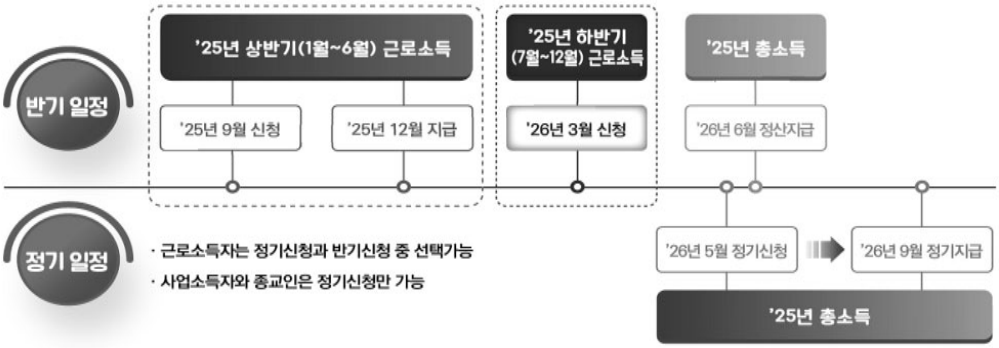

❶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❷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 12월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5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26년 6월 25일(예정)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참고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 신청 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참고 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개요
- ○ 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 ○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4 신청 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국민비서)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카카오,토스 등),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 (카카오톡/네이버)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문자메시지)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니 확인 후 스미싱 걱정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의 스미싱이 걱정되는 경우, ARS를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5 주요 문답 사례

문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참고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 2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 3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4 **자녀장려금 신청은 별도로 안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6월 25일 지급 예정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문 5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문 6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 7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문 8 **하반기분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하반기분 신청기한인 3.16.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26.5.1.~6.1.) 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100% 지급)
○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26.6.2.~12.1.) 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 지급)